

디자인보호법기본이론(2판) 정오표_202512

디자인보호법 흐름도

디자인등록요건(62조), (12) 일부심사등록제도(2조6호), ※심사등록요건(62조1항), ※일부심사등록요건(62조2/4/5항)으로 수정

6페이지

1. 디자인과 물품의 불가분성으로 수정

29페이지

1. 출원서(제37조 제1항)를 아래와 같이 수정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 물품의 명칭뿐만 아니라 그 물품의 부분에 관한 명칭도 기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컵’, ‘컵이 손잡이 부분’ 등은 인정되지만,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특정되지 않는 ‘컵의 코너’, ‘컵의 모퉁이’, ‘컵의 중앙’, ‘컵의 하부’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부분디자인 여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32페이지

10. 정당한 물품류 및 물품명(제40조 제2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

물품류는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구분에 따르되, 디자인등록출원서 및 도면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컵의 코너’, ‘컵의 모퉁이’, ‘컵의 중앙’, ‘컵의 하부’ 등과 같이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물품명은 등록받을 수 없다.

71페이지

3. ‘이용’에 관한 대법원 참고 판례로 수정

105페이지

10. (기타)에서 부분디자인 여부 삭제

195페이지

10)을 아래와 같이 수정

부분디자인에 관한 출원에서 출원서 및 도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명칭을 사용한 것. 예를 들어, “컵의 코너, 컵의 모퉁이, 컵의 중앙, 컵의 상부, 컵의 하부 등”(×)→“컵, 컵의 손잡이, 컵의 부분(○)“

144페이지

2.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경우를 아래와 같이 수정

원칙적으로 거절이유에는 해당하지 않고(제62조 제2항), 정보제공사유, 이의신청이유,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지만, 정보제공이 있는 때에는 그 제공된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거절이유가 될 수 있고(제62조 제4항), 신규성 흠결이 명백한 경우에도 거절이유가 될 수 있다(제62조 제5항). 신규성 흠결이 명백한 경우란 예1) 이의신청으로 등록이 취소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다시 출원한 경우, 예2) 심판 또는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다시 출원하거나, 해당 절차를 통해 무효가 확정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다시 출원한 경우, 예3) 동일 출원인이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복수로 출원한 경우 또는 제3자가 타인의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중복 출원한 경우, 예4) 그 밖에 심사관이 해당 출원디자인이 제3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6조제1항·제2항에 해당함이 명확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심사기준).

185페이지

2.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경우를 아래와 같이 수정

원칙적으로 거절이유에는 해당하지 않고(제62조 제2항), 정보제공사유, 이의신청이유,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지만, 정보제공이 있는 때에는 그 제공된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거절이유가 될 수 있고(제62조 제4항), 선출원주의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도 거절이유가 될 수 있다(제62조 제5항). 선출원주의 위반이 명백한 경우란 예1) 이의신청으로 등록이 취소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다시 출원한 경우, 예2) 심판 또는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다시 출원하거나, 해당 절차를 통해 무효가 확정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다시 출원한 경우, 예3) 동일 출원인이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복수로 출원한 경우 또는 제3자가 타인의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중복 출원한 경우, 예4) 그 밖에 심사관이 해당 출원디자인이 제3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6조제1항·제2항에 해당함이 명확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심사기준).

208페이지

2)예외를 아래와 같이 수정

다만, 제3자의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그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모든 등록요건에 대한 거절결정을 할 수 있고(제62조 제4항), 신규성(제33조 제1항 각호) 또는 선출원주의(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제62조 제5항). 신규성 흠결 또는 선출원주의 위반이 명백한 경우란 예1) 이의신청으로 등록이 취소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다시 출원한 경우, 예2) 심판 또는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다시 출원하거나, 해당 절차를 통해 무효가 확정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다시 출원한 경우, 예3) 동일 출원인이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복수로 출원한 경우 또는 제3자가 타인의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중복 출원한 경우, 예4) 그 밖에 심사관이 해당 출원디자인이 제3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6조제1항·제2항에 해당함이 명확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심사기준).

258페이지

4. 이의신청기간의 실질적 연장을 아래와 같이 수정

비밀디자인청구를 한 등록디자인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디자인의 설정등록일부터 도면 등 실질적 사항이 게재된 공보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그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면 등 실질적 사항이 게재된 공보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제68조 제1항 단서).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란 1) 디자인권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내용증명, 서면경고, 소장, 가처분신청서 등의 형식으로 침해 주장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2)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또는 콘텐츠 유통서비스로부터 권리침해 신고에 대한 소명요청이나 안내문 또는 경고문 등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심사관이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심사기준).

283페이지

3. 시기적 요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

이의신청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할 수 있지만, 그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디자인의 설정등록일부터 도면 등 실질적 사항이 게재된 공보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그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면 등 실질적 사항이 게재된 공보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제68조 제1항 단서).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란 1) 디자인권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내용증명, 서면경고, 소장, 가처분신청서 등의 형식으로 침해 주장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2)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또는 콘텐츠 유통서비스로부터 권리침해 신고에 대한 소명요청이나 안내문 또는 경고문 등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심사관이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심사기준).

283페이지

1)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제69조)을 아래와 같이 수정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다만, 특허청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1회

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 한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주장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에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주장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그 신청의 전체 취지로 보아 실질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주장이 불충분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이 침해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고 입증하도록 보정을 명한다(심사기준).

2)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73조 제2항)를 아래와 같이 수정
심사장은 이의신청인이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심사장의 부분송달 및 답변서 제출기회 제공의무)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의 경과 후에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한편, 이의신청인이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결정으로 각하한다(심사기준).

끝.